

- ◆ 본 안내책자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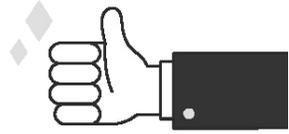
고객상담센터 1350



Contents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7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8
2. 고용장려금 찾기	9
II. 고용창출장려금	11
1. 사업 개요	12
2. 지원 절차	12
3. 지원 유형	14
4. 지원 제외 근로자	15
5. 감원방지 의무	17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8
III. 고용안정장려금	35
1. 사업 개요	36
2. 지원 절차	36
3. 지원 유형	38
4. 지원 제외 근로자	39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40





IV. 고용유지지원금 49

- 1. 고용유지지원금 50
- 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58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61

- 1. 청년내일채움공제 62
-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64
- 3.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66
- 4. 임업피크제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67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69

-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0
-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72
- 3.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74
- 4.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76
- 5.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지원 78
- 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80

VII. 참고사항 83

- 1.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내용정리 84
- 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92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95
- 4. 신중년 적합직무 97
- 5.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 102

- ◆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109



고용창출장려금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장애인,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을 지원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0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 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장년·고령자 고용 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02 고용장려금 찾기

1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자 하며 근로자 증가가 예상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8
② 시간선택제 근로제를 도입할 여건이 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24
③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26
④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을 고용하고자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28
⑤ 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0
⑥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64
⑦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62
⑧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66

2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7
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7
③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47
④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규직전환 지원	40
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42
⑥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45
⑦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67

3 고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정이 있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0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8

4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0
②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 고용환경개선 용자 지원	72
③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용자 지원	74
④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78
⑤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지원	80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감원방지 의무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01 사업 개요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02 지원 절차



- ① 사업 참여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단,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신청시에는 투자견적서·계약서, 설비
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매·임대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p>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p> <p>·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p> <p>< 증가근로자수 1인당 >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임금감소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p> <p>< 기업당 > ▶ (설비투자비 융자) 최대 50억원</p>
	<p>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p> <p>·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p> <p>< 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p>
	<p>국내복귀기업 지원</p>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제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p> <p>< 증가근로자수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p>
	<p>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p> <p>·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p> <p>< 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p>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p>고용촉진 장려금</p> <p>·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p> <p>< 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p>
	<p>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요건심사형)</p> <p>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p> <p>< 증가근로자수 1인당 > ▶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p>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4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③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는 제외
 -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의 경우,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규모기업은 최저임금 12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
 - * 일자리 함께하기의 경우 최저임금 100%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⑥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⑧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④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⑥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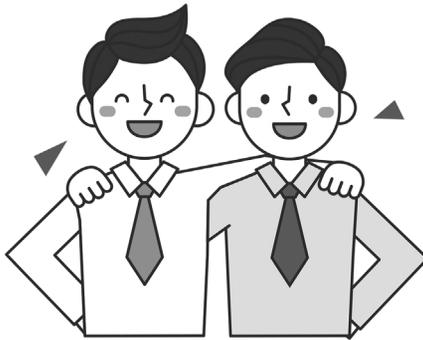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출소 또는 출소 예정자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를 이수한 사람
- 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5 감원방지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해당 없음



0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2 3 4 5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지원요건

① 아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다. 일자리 순환제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 가능

③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을 제·개정 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 조기단축기업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 지급 단위기간인 3개월간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3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3년간 지원

◆ 기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18년 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상시근로자 수)으로 지원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60만원, 1년		-	
300인~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500인 초과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지원 불가

나. 300인~500인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월 60만원, 1년, 제조업종은 80만원 2년 지원
- 임금보전 :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다.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인건비: 제조업은 80만원, 2년, 비제조업은 80만원 1년 지원
- 임금보전 : 500인 이하 제조업종 및 특례제외업종도 2년 지원

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

※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2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3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준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 증가근로자 인건비 :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 지원
- 임금보전 : 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

나. 300인 미만 기업

- 증가근로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
- 임금보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월 최대 40만원

다. 지원기간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 지원
- 법정시행일이 속한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

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

※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

상시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조기단축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3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함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지원

②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임금보전 지원

○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희·무도유희·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틱업 등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 사업추진체계

① '18년 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요건심사 방식)



②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참조(78페이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❶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❷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❸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❹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❺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❻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 일할 계산하지 않음

○ 장려금 지급 제외

- ❶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❷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❶ 또는 ❷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일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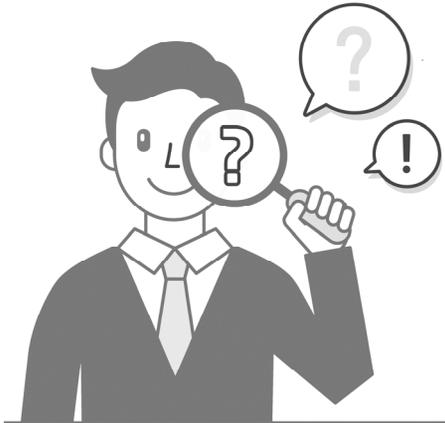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❶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❷ 최저임금 110% 이상의 임금 지급
- ❸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❹ 정규직 채용*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VII. 참고사항 / 04.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 (97페이지)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 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 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 재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 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초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이직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 지원 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

〈참고〉

- 지원인원 = 기준 피보험자수 - 제외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수	제외 피보험자 수
원칙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수 (2017.1.1.부터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30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10명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지급 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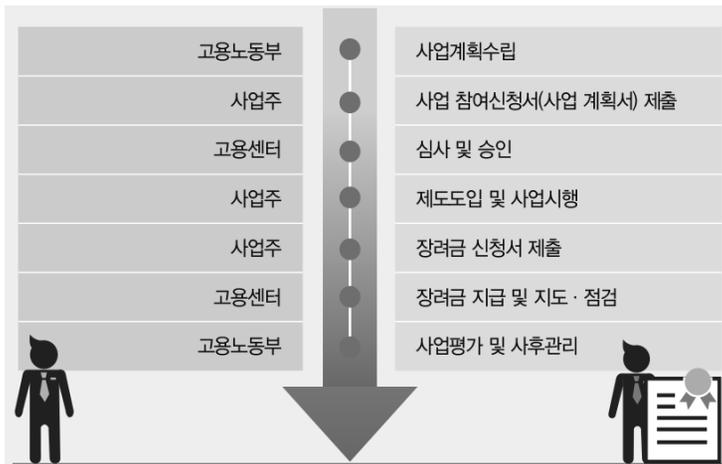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 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01 사업 개요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경우 사전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

02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
-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차별없는일터지원단운영사업' 진단 참여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기업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연도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전환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사업 참여 신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 (주2일이하) 5만원 (주3일이상) 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용자지원)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p><전환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p><해당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용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육아기근로시간단축</th> <th>육아휴직</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월 20만원</td> <td>월 30만원</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월 10만원</td> <td>미지급</td> </tr> </tbody> </table> <p>※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1호 인센티브)</p>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미지급								

04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수습 근로 3개월 이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 ②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④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0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정규직전환 지원

1 2 3 4 5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 수준 및 한도

① 지원 수준

-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지원

② 지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지원 대상:

-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①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 (임금감소 보전금)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장려금 지급 제외

-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 ① 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③ 근로자의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무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유연근무제 유형 〉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를 도입·활용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및 제58조제3항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반드시 필요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응자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 지원 참조(80페이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 지원 요건

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요건

-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③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 수준

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근로자 혹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②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희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 지급 기간 및 주기

①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근로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②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IV.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 지원금
2.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01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①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②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③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④ 사업주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⑥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⑧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협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생략 가능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최소한 b~d



⑤ 지원제외 사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 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부지급

○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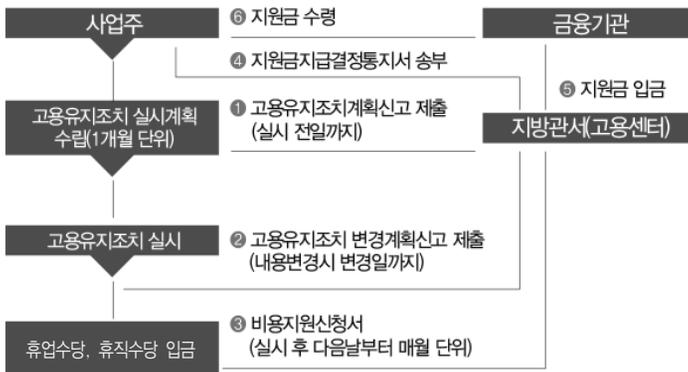
구분	지원수준	
	일반 고용유지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지원, 1일 한도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 지원, 1일 한도 7만원(단, 대규모 기업은 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3/4 지원

■ 지원기간

휴업·휴직은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歷) 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센터)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 각종 서식(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고용안정)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

○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 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8. 4. 1일인 경우

기준기간			직전3개월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
'17. 10월	'17. 11월	'18. 12월	'18.1월 ~ 3월	'18. 4월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 산정예시

'18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A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8.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8.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7.10.1 ~ '17.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7.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기준기간('17.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구분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3월	'18.4월
총근로시간	11,500h	9,550h	8,400h		3,360h
소정근로 시간 (1일8h)	9,200h (8h*50명*23일)	8,400h (8h*50*21)	8,400h (8h*50*21)		
연장근로시간	2,300h (1일 2h*50*23)	1,150h (1일 1h*50*23)	-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일수	23일	21일	21일		22일

- * 유의사항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8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7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7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 (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됨.

- 고용유지조치기간('17년 4월)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8.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 시간 조정 → 2,560h = 8일 × 20명 × 4h + 8일 × 30명 × 8h
- '18.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 × 20명*8h + 5일 × 30명 × 0h
- '18.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 50명 × 0h

-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

-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6,457h = 9,817h(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 3,360h(4월 총 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
 -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2) 휴직

○ 휴직의 의미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02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1)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2) 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3)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5)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3.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4. 임금피크제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01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자기부담금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하여 목돈마련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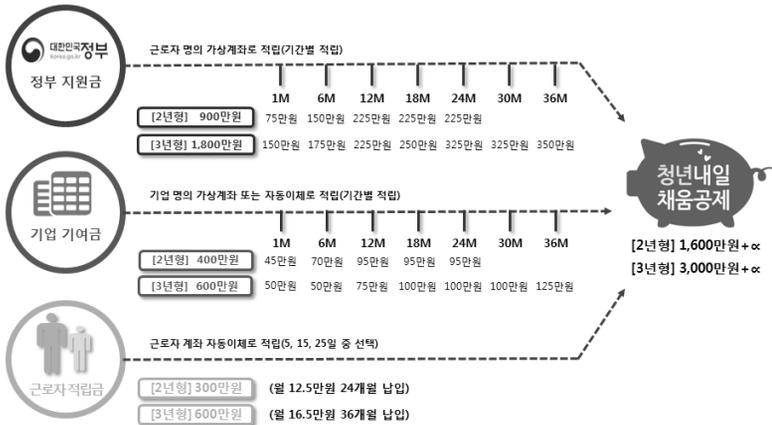
○ 지원요건

	2년형	3년형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단,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수준 및 기간

	2년형	3년형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3년간 취업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0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150만원은 기업에 실 지원)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신청절차

정규직 채용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0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사업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 지원수준 및 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 신청절차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03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4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 지급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04 임금피크제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지원요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수준 및 기간
 - 피크 임금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가 연간 7,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임금이 7,250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지원수준 및 기간
 - 근로자 :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
- 신청절차(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공통)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 말일(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3.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4.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5.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용자 지원
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0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내역	지원한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75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이상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 지급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0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 무상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용자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산업단지형은 최대 20억원(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8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용자지원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매입·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연 1~2%로 7억원까지(공동 9억원) 용자가 가능하며 용자지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여성고용친화시설: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지원신청시기

-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용자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용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수도 있음.

○ 지급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용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03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 용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구입·설치·수리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구분	지원 유형	지원 범위
시설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 지원수준
 - 용자조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 고용 조건)
 - 용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1%

용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	--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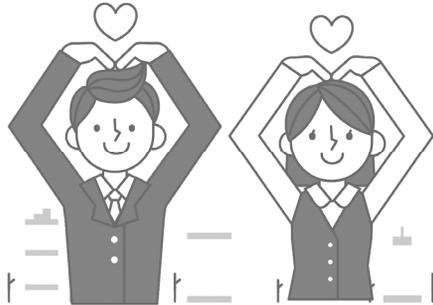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사업주 용자·지원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등
- 용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04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내용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 지원수준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 고용 조건
 - 대출금리 : 연 1%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신청일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개선계획서 등
- 융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05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용자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용자 지원대상 시설 등〉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임차비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설비투자 용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용자가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용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항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용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06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지원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용자 지원

○ 지원내용

- (인프라구축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 용자지원)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중견기업 2%)

【예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를 아래와 같이 투자한 경우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 (투자총액)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용자지원)	4천만원	4천만원 (용자지원)	6천만원	4천만원 (용자지원)

용자가능 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용자는 담보·신용 등의 사유로 대항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할 수도 있음.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 용자 대상자 결정 심사 시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 자료로 금융 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가능 관련 서류(담보능력, 용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체(예정지 포함)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문의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 대출약정체결관련은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052)704-7357로 문의





참고사항

1.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및 내용정리
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 · 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4. 신중년 적합직무
5.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

01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및 내용 정리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 용 창 출 장 려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사업)	<p>①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실근로시간 단축제, ③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하여야 함</p> <p>▪ [인건비] [임금감소액보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증가근로자 인건비</th> <th colspan="2">임금보전</th> </tr> <tr> <th colspan="3">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비 제 조 업</td> <td>우선지원 대상기업</td> <td>80만원, 1년</td> <td>40만원, 1년</td> </tr> <tr> <td>중견기업</td> <td>40만원, 1년</td> <td>40만원, 1년</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40만원, 1년</td> <td>-</td> </tr> <tr> <td rowspan="3">제 조 업</td> <td>우선지원 대상기업</td> <td>80만원, 2년</td> <td>40만원, 2년</td> </tr> <tr> <td>중견기업</td> <td>40만원, 2년</td> <td>40만원, 1년</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40만원, 1년</td> <td>-</td> </tr> </tbody> </table> <p>▪ [설비투자비 용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지원 1%, 대규모 2%)</p>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비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비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p>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증가근로자 인건비</th> <th colspan="2">임금보전</th> </tr> <tr> <th colspan="4">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500명 초과</td> <td colspan="2">60만원, 1년</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300~ 500명</td> <td>제조업</td> <td>80만원, 2년</td> <td>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td> <td>40만원, 2년</td> </tr> <tr> <td>비제조업</td> <td>60만원, 1년</td> <td>비제조업</td> <td>40만원, 1년</td> </tr> <tr> <td rowspan="2">300명 미만</td> <td>제조업</td> <td>80만원, 2년</td> <td>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td> <td>40만원, 2년</td> </tr> <tr> <td>비제조업</td> <td>80만원, 1년</td> <td>비제조업</td> <td>40만원, 1년</td> </tr> </tbody> </table>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1년		-		300~ 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4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4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1년		-																															
300~ 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4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4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비제조업	40만원, 1년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p>②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 기업</p> <p>※ 법정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665 369 1019 746">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665 369 816 487">상시근로자 수</th> <th data-bbox="816 369 949 427">증가근로자 인건비</th> <th data-bbox="949 369 1019 427">임금 보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data-bbox="816 427 1019 487">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td> </tr> <tr> <td colspan="2" data-bbox="665 487 816 569">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td> <td data-bbox="816 487 949 569">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td> <td data-bbox="949 487 1019 569">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665 569 732 746" rowspan="2">300인 미만</td> <td data-bbox="732 569 816 661">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td> <td data-bbox="816 569 949 661">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td> <td data-bbox="949 569 1019 661">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732 661 816 746">기타업종</td> <td data-bbox="816 661 949 746">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td> <td data-bbox="949 661 1019 746">40만원, 3년</td> </tr> </tbody> </table> <p>③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p> <p>※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p> <table border="1" data-bbox="665 857 1019 1472">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665 857 828 975">상시근로자 수</th> <th data-bbox="828 857 900 914">법정근로시간 단축</th> <th data-bbox="900 857 1019 914">52시간 조기단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data-bbox="828 914 1019 975">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td> </tr> <tr> <td data-bbox="665 975 732 1142" rowspan="2">500인 초과</td> <td data-bbox="732 975 828 1085">증가근로자 인건비</td> <td data-bbox="828 975 900 1085">60만원, 1년</td> <td data-bbox="900 975 1019 1085">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732 1085 828 1142">임금보전</td> <td data-bbox="828 1085 900 1142">40만원, 1년</td> <td data-bbox="900 1085 1019 1142">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665 1142 732 1308" rowspan="2">300인~500인</td> <td data-bbox="732 1142 828 1251">증가근로자 인건비</td> <td data-bbox="828 1142 900 1251">60만원, 1년</td> <td data-bbox="900 1142 1019 1251">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732 1251 828 1308">임금보전</td> <td data-bbox="828 1251 900 1308">40만원, 2년</td> <td data-bbox="900 1251 1019 1308">40만원, 2년</td> </tr> <tr> <td data-bbox="665 1308 732 1472" rowspan="2">300인 미만</td> <td data-bbox="732 1308 828 1418">증가근로자 인건비</td> <td data-bbox="828 1308 900 1418">80만원, 1년</td> <td data-bbox="900 1308 1019 1418">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td> </tr> <tr> <td data-bbox="732 1418 828 1472">임금보전</td> <td data-bbox="828 1418 900 1472">40만원, 2년</td> <td data-bbox="900 1418 1019 1472">40만원, 3년</td> </tr> </tbody> </table>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 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2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3년	상시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조기단축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3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 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2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3년																																															
상시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조기단축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1년	40만원, 2년																																															
300인~500인	증가근로자 인건비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증가근로자 인건비	8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임금보전	40만원, 2년	40만원, 3년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p>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p> <p>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p>	<p>■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 조건</td> <td>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3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p>* 직전년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p> <p>■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p>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조건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조건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p>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p>	<p>■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18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중견</td> <td>9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p>■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240만원</td> <td>960만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120만원</td> <td>480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p>■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p> <p>*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 도서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p> <p>**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p> <p>■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저임금 110%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p>	<p>■ [인건비] 신규고용 1인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6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3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18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증가액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시간 선택 제 전 환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감소 보전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모든 기업</td> <td>최대 40만원</td> <td>480만원</td> </tr> </tbody> </table>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20만원(1개월 단위) 초과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 인력 인건비	위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3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p>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거나, ②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인프라 구축비 용자]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1%, 중견2%)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간제 파견 근로자 재고용	임신, 출산전후 휴가 등 또는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당해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육아 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대상</th> <th>1개월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 <td>우선지원 대상</td> <td>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10만원</td> </tr> <tr> <td>육아휴직</td> <td>우선지원 대상</td> <td>30만원</td> </tr> </tbody> </table> <p>*1호 인센티브 10만원</p>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구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20만원												
	대규모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체 인력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동 휴가·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 <td>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td> <td>3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 1개월간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조정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근로시간 단축률 50% 미만 대규모기업 1/2) 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심사위원회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 50%(1일 6만원) 이내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청년내일 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만15세~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18년에 일학습병행훈련 종료 후 일반 근로자로 전환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은 '18년에 한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원 ▪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가입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원(400만원 전액 청년에게 적립) 								
청 장 년 고 용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table border="1" data-bbox="335 756 648 888"> <thead> <tr> <th>기업 규모</th> <th>청년 신규채용</th> </tr> </thead> <tbody> <tr> <td>30인 미만</td> <td>1명 이상</td> </tr> <tr> <td>30인~99인</td> <td>2명 이상</td> </tr> <tr> <td>100인 이상</td> <td>3명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24만원을 근로자 수의 20% (대규모기업은 10%)한도로 지원 * '20년까지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60세 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급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 * 감액된 임금과 지원금의 합계를 7,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8.12.31까지 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이하로 단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감액된 임금의 1/2를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환경개선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① 보육아동 중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1/3 이상 또는 ② 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수가 1/4 이상이면서 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 수 1/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을 한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매월 지급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전월분에 대하여 월 200~250만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만큼 매월 지급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및 여성 고용환경 개선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매입·임차 하거나 운영주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비용 무상지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유형</th> <th>대상기업</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독</td> <td>우선지원</td> <td>4억원</td> </tr> <tr> <td>대규모</td> <td>3억원</td> </tr> <tr> <td rowspan="2">사업주 단체</td> <td>우선지원</td> <td>8억원</td> </tr> <tr> <td>대규모</td> <td>6억원</td> </tr> <tr> <td rowspan="2">산업단지형</td> <td>산업단지형</td> <td>최대 20억원</td> </tr> <tr> <td>컨소시엄형</td> <td>최대 10억원</td> </tr> </tbody> </table> [교재교구비 무상지원] 대규모기업 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한도 지원(교체는 3천만원) [용자지원] 7억원 한도(공동 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우선1%, 대규모 2%) 	유형	대상기업	지원금액	단독	우선지원	4억원	대규모	3억원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8억원	대규모	6억원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
	유형	대상기업	지원금액																	
	단독	우선지원	4억원																	
대규모		3억원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8억원																		
	대규모	6억원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	최대 20억원																		
	컨소시엄형	최대 10억원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p>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1인당 1억원,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단, 의무고용 인원의 25%는 중증 장애인 이어야 함)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용자	<p>준고령자나 고령자를 용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p> <p>* 고용보험법 및 타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용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금 1억원당 (준)고령자 1명 신규 고용, 사업주당 10억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연 1%)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 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 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비 용재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1%, 대규모 2%)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재택·원격 근무도입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 ▪ [인프라구축비 용재 총 투자비의 1/2 이내 4,000만원 한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우선1%, 중견2%)

02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및 부정행위 조치

1 중복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p>7.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p> <p>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p> <p>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p>
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②에 따른 각 지원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3호)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⑥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9호)

상호조정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2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이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불이익 :

부정수금액의 반환 + 부정수금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0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04 신중년 적합직무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직업명	직무 개요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0221	경영· 진단 전문가	•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 업무 수행
	0241	광고· 홍보전문가	•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 (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실행 계획을 수립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 사업체의 각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광고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수행
	0281	무역 사무원	• 재료나 상품의 통관 및 수출입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사무적인 업무 수행
	0284	생산· 품질 사무원	•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을 위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생산활동을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 수행(열처리제품 생산관리원 등)
	0282	운송 사무원	•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수업체에서 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0222, 0262	인사·노무 전문가/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 인사노무 사무와 직무능률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실행·평가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 경영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 업무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자재 업무 수행
	0242, 0293	조사 전문가/ 통계사무원	•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하는 업무 수행
	0271, 0272	회계 사무원 /경리사무원	• 사업체의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결산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
신직업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하는 업무 수행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직업명	직무 개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는 업무 수행
	1402	건축공학 기술자	•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구조, 감리, 시공, 설비 안전, 건축에너지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 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
	1584	산업안전원 및 위험관리원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의 업무 수행
	133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업무 수행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업무 수행
	1320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
	1403	토목공학 기술자	•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계획하거나 수행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직업명	직무 개요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 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치·설치를 감독
	1404, 9015	조경기술자/ 조경원	•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 • 가로, 공원 등에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수행
	신직업	빅데이터 전문가	• 빅데이터전문가 데이터 수집 및 확보, 처리, 분석, 활용 등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
	신직업	3D프린팅 전문가	•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 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
	2311	사회복지사	•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탐색 및 문제 진단을 하고, 심리검사, 상담프로그램 등 도구나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발달 지도 및 치유 활동 수행
	2312, 2313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탐색 및 문제 진단을 하고 발달 지도 및 치유활동 수행 • 청소년수련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등을 지도
	신직업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 초·중·고등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신직업	전직지원 전문가	•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신직업	노년플래너 (시니어 플래너, 웰다잉강사)	• 노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일, 경제관리, 정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고객 상태에 적합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신직업	산림교육 전문가	• 산림문화 및 휴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수목원, 휴양림 등 관광·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를 해설해 주는 업무 수행	
신직업	산업카운슬러 (감정노동 상담사)	• 산업현장의 직장인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제반 심리적 갈등과 고충 및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산업카운슬링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직업명	직무 개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52	패션 디자이너	• 양복, 양장, 한복,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캐주얼, 유니폼, 평상복, 정장 등 각종 의류 및 액세서리·가방 및 신발의 새로운 디자인을 기획·창안하고 샘플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501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환자,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병원동행, 보행훈련, 헬스케어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21	기술 영업원	• 산업용장비, 정보통신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
	6124	제품·광고 영업원	• 도매 및 제조업체 등에 고용되어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
	6122	해외 영업원	•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
건설·채굴직	701 (7011~7019)	건설구조 기능원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기초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골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시공하거나 보수
	702 (7021~7029)	건축마감 기능원	•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정,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등의 작업
	7301	건설배관공	• 건축물의 상·하수도 배관, 냉난방 배관, 급·배수 위생 배관을 설치
설치·정비·생산직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가전제품을 설치해 주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오작동되는 경우에는 수리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 각종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업용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의 성능이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용접기 설치 및 정비업무 등)
	8131	금형원	•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하고 정비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용	•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고 장식 목적이나 전기, 자기적 특성을 균등 부여하기 위하여 금속제품 또는 부품을 도금 및 도포하는 기기를 조작

구분	직업 Code (KECO 세분류)	직업명	직무 개요
	8312	내선 전기공	• 주택·공장·빌딩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옥내 전선관, 배선 또는 등기구류 설비를 건물내부에 시공하거나 보수
	8241 (8242)	용접원 (용접기 조작원 포함)	• 용접원 : 용접장비·기기를 조작하여 금속·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용접, 압접, 납땜 • 용접기 조작원 : 열원(전기, 가스 등)의 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용접장비 및 기기를 조작
	8329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수동공구와 검사계기를 사용하여 심전기, 살균장치, 수술실의 램프와 테이블, 투열 요법기 등 전기의료장치 및 기타 전기 및 전자 기기를 설치하고 검사·수리
	8124	자동차 정비원	•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자동차의 엔진, 차체 그리고 관련 부품 등을 수공구 및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조정,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 냉·난방장치와 공기조정장치 등의 기구를 연결시키고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후 정상작동을 위해 열과 습도를 방출시켜 공기조정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이를 정비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 산업용 및 건물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일러·탱크·압력용기 등을 조립하여 배관·용접하거나 고장난 보일러를 정비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 섬유, 방사 또는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
	신직업	연구장비 전문가	• 연구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장비의 운용,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장비 운용을 통해 각종 데이터 산출, 해석을 하며, 각종 시험분석, 데이터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
	신직업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 화학물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를 대행하고 유독물 취급 시설의 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리,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업무를 수행
	신직업	기업재난 관리자	•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수행

* 이외에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증년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직무

05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대상 및 요건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지원수준 및 한도

-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단위:만원)

구 분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1,400)	770 (1,540)	450 (90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1,100 (2,200)	700 (1,400)	300 (300)

○ 지원절차

-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 공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청년·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청년·경력단절 여성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신성장 서비스업 75%))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다음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적용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지원대상 및 요건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후 군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일 것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 일반학교

○ 지원수준 및 한도

- ▶ 지원수준 :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 30%, 중견기업 : 15%

○ 지원절차

-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지원대상 및 요건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3~10년이 지난 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일 것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재고용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 15%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지원대상 및 요건

▶ 2017. 6. 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일 것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6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지원대상 및 요건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할 것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중소기업 소득공제액 = (임금 감소분 × 50%)+(임금보전분* × 75%)

*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보전분으로서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자 소득공제액 = 임금 감소분 × 50% (한도 1,000만원)

○ 지원절차

-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7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지원대상 및 요건

▶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기업일 것
- 단,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대 5%, 중견 10%,
중소 20%)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18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문의처



국세청콜센터(☎126)

◆ 전국 고용센터(문의처)

※ 각종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02-2004-7910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02-2142-8433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6001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02-2639-2407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02-2171-1803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10 금강타워10층	02-3468-4709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시구로구디지텔로34길27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02-3282-9389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센터 5층	032-460-4815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032-540-5742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 서구 서곶로 299, 10층 기업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032-540-2051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6층 기업지원팀	032-320-8952
	부천지청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3층 기업지원팀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031-920-3988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가능2동 754)	031-828-0833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031-231-7857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739-3173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031-463-0763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2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31-646-1263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3-250-1930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176(고동) 강릉고용센터 1층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4178,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60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강원태백시번영로341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층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033-371-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과	051-860-192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51-760-7211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1-330-9951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055-239-0963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055-330-6436
	양산지청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센터 3층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2층	055-760-6753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55-650-1814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31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2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외환은행 2층)	053-605-9518
	대구서부지청	대구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3-4층	054-970-1906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 2522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70, 3056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4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휴천동) 2층	054-639-1142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영 주 지 청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층	054-559-8231
	안 동 지 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2
광주청	광 주 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5
	광 주 청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층)	062-960-3201
	전 주 지 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01
	전 주 지 청	남원고용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14
	전 주 지 청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6
	익 산 지 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51
	익 산 지 청	김제고용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군 산 지 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패키지팀	063-450-0637
	여 수 지 청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061-720-9170
	여 수 지 청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061-650-0157
목 포 지 청	목포고용센터	전남목포시평화로5번지 4층	061-280-0542	
목 포 지 청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061-530-2911	
대전청	대 전 청	대전고용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042-480-6019
	대 전 청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5층 공주고용센터 (신관동)	041-851-8507
	대 전 청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03
	대 전 청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044-861-8993
	청 주 지 청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230-6714
	천 안 지 청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41
	충 주 지 청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 4032
	충 주 지 청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 령 지 청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43
	보 령 지 청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64-710-4462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2018년 7월

발행 | 고용노동부
제작 | 열림기획(주)